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유진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진채피언증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채피언증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유진채피언증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유진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4년 2월 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2월 2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제한없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fund.eugenefn.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진 챔피언 증권 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3.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이 집합투자기구는 ESG 요소를 고려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진채피언증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코드 : CD470]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유진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의 90% 이상을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중기채권형 모투자신탁과 단기사채 및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단기채권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원본 손실 위험, 어음 및 채권 가격변동에 따른 금리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유진채피언증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채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과 단기사채 및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채피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금리국면 판단에 따라 모펀드간의 투자비중을 조절합니다.
-------------	--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10% 이내	0.3200	0.2000	0.2500	0.3316	44	80	117	196	43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2)	납입금액의 0.30% 이내	0.1700	0.0500	0.2500	0.1809	48	68	88	132	2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0.4100	0.2900	0.3500	0.4215	43	88	136	237	533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05% 이내	0.2200	0.1000	0.2200	0.2314	29	54	80	135	3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2650	0.1450	0.2400	0.2764	28	58	89	156	35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A2형, 종류 C형,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실제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2.06 ~ 24.02.05	22.02.06 ~ 24.02.05	21.02.06 ~ 24.02.05	19.02.06 ~ 24.02.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2018-08-22	5.25	3.67	2.36	2.23	2.28
비교지수(%)	2018-08-22	3.70	2.90	2.05	1.91	1.91
수익률 변동성(%)	2018-08-22	0.71	1.13	1.02	0.82	0.79

주1) 비교지수 : KOB1120지수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로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전체	ESG 펀드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재환	1979	책임 매니저	17개	27,227억	5.26	4.20	5.26	4.20	14년1개월	5년5개월
최성진	1992	부책임 매니저	5개	17,324억	-	-	5.26	4.20	5년 7개월	3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원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신탁수익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회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종목의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ESG 채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ESG관련 평가등급이 양호한 기업의 채권 및 어음과 ESG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다만, ESG관련 채권 및 어음의 부재 또는 유통물량이 적을 경우 투자목적 달성이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G 채권 및 어음은 발행 특성상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별 위험이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분산투자가 잘 이루어진 투자신탁에 비하여 클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p>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환매 방법</p> <p>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und.eugenefn.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수익자	<p>집합투자기구</p>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29-3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fund.eugenefn.com [업무위탁] 회사명 : 한국ESG기준원 위탁업무 : 펀드의 투자대상자산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 업무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제한없음)	
효력발생일	2024년 2월 20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fund.eugenefn.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4. 집합투자업자' 및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선취(A2)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자본시장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디폴트옵션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I)	최초 납입금액이 200억원 이상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청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und.eugenef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und.eugenefn.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und.eugenefn.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3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3
3. 모집예정금액	13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4
5. 인수에 관한 사항	1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6
4. 집합투자업자	16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7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8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0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23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33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40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4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6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50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54
1. 재무정보	5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억좌, 억원)	56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6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65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6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67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67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68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68
6. 채권평가회사	69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70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70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73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73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77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77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78
[붙임] 용어 풀이.....	79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유진채피언증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CD470]				
종류(클래스)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형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D471	CD472	CD473	CD474	CD475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형(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형(C-I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형(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형 (C-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형 (C-P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D476	CD477	CD478	CD479	CD480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형 (C-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형 (C-Re)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 (S-P)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 -무권유저비용 (A-G)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D481	CD482	CD483	CD484	CD485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 -무권유저비용 (C-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2)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퇴직연금형 (S-R)	수수료미징구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O)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D486	CX414	DK041	E162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1좌 단위로 모집하며,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fund.eugenefn.com) 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유진챔피언중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CD470]				
종류(클래스)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	수수료선취 -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형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D471	CD472	CD473	CD474	CD475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형(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형(C-I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형(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형 (C-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형 (C-P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D476	CD477	CD478	CD479	CD480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형 (C-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형 (C-Re)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형(S)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 (S-P)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 -무권유저비용 (A-G)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D481	CD482	CD483	CD484	CD485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형 -무권유저비용 (C-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A2)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퇴직연금형 (S-R)	수수료미징구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O)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D486	CX414	DK041	E162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사항
2018.08.22	최초설정
2019.09.16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2019.09.16)에 따른 정정
2019.10.25	1)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 Class A2 수익증권 신설 3)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0.10.20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021.06.11	1)모투자신탁명 변경(유진챔피언중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유진챔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유진챔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운용전략 업데이트에 따른 ESG투자 프로세스 추가 반영 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윤성주 → 정재환)

	4) Class S-R 수익증권 신설
2021.09.08	1) 투자위험등급 (5등급 → 변동성 기준 6등급) 2) <유진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개정 3) 업무위탁 내용 기재
2021.10.20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022.09.01	1)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 투자위험등급 변경(6등급 → 5등급)
2022.10.18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023.03.21	1) 클래스 신설(Class O) 2)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2.20. 시행) 4)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2023.01.01. 시행)
2023.10.18	1) 부책임용전문인력 추가(최성진) 2)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024.02.20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10.20 시행) 2)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유진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 파크원 타워 1 22층 대표전화 ☎ 02-2129-3300 / 홈페이지 fund.eugenefn.com

주)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위탁]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서비스 제공 수탁업자"라 한다)는 한국ESG기준원입니다.
- ② 서비스 제공 수탁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펀드의 투자대상자산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 업무
- ③ 서비스 제공 수탁업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 수탁업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회사명	한국ESG기준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 02-3775-3339 홈페이지 : www.cgs.or.kr
회사연혁등	2002.06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설립 2010.08 (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칭 2022.09 한국ESG기준원 개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전체	ESG 펀드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재환	1979	책임 매니저	17개	27,227억	5.26	4.20	5.26	4.20	14년1개월	5년5개월
최성진	1992	부책임 매니저	5개	17,324억	-	-	5.26	4.20	5년 7개월	3개월
주요이력										
정재환	- 2003.09~2004.03 HSBC 은행 - 2008.01~2009.06 신영자산운용 마케팅 - 2009.06~2013.07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2013.07~2015.02 NH투자증권 - 2015.02~2015.07 NH금융지주 - 2015.07~2020.01 한국투자공사 - 2020.01~2020.09 현대자동차 - 2020.10~현재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채권운용팀									
최성진	- 2018.06~2021.05 다올자산운용 - 2021.05~2023.03 한국투자증권 - 2023.03~현재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채권운용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4)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유진자산운용이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유진자산운용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정재환	2021.06.11 ~ 현재
윤성주	2018.08.22 ~ 2021.06.10

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최성진	2023.10.18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하지만 종류의 수 및 구분에 관계없이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일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종류간의 차별 없이 통합하여 운용됩니다.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선취(A2)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자본시장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를 통하여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디폴트옵션(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2)	최초 납입금액이 200억원 이상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로서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이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청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① 유진챔피언단기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② 유진챔피언ESG중기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유진챔피언중단기채 증권자투자신탁(채권)	100% 이하	100% 이하
①+②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위험관리
유진챔피언단기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사채 및 국내어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단기채권형 상품으로 60% 이상을 A2-등급 이상의 국내 어음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 중 일부자산은 유동성확보를 위해 단기성 자금을 투자하고, 일부자산은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듀레이션 0.5년 내외로 금리변동 리스크 축소 포트폴리오 내 현금성 용이한 단기물 일정 비중 유지 Carry 와 상대가치 매력중심의 채권 (신용등급 A0이상) 투자
유진챔피언ESG중기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60% 이상을 A-등급 이상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 중 일부자산은 유동성확보를 위해 단기성 자금을 투자하고, 일부자산은 초과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 채권 취득 시, 당사 ESG Scoring Model 기준 '중(2등급)' 이상의 ESG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초과수익을 추구할 계획. 목표 듀레이션 1.5년 내외, 금리변동 따라 탄력적 대응 포트폴리오 내 유동성 높은 국공채/특수채/은행채 일정비중 활용 섹터간 스프레드를 고려하여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 금리 메리트 있는 어음(신용등급 A2-이상), 단기사채(신용등급 A2-이상), 채권(신용등급 A-이상)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단기구간 투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챔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과 단기사채 및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금리국면 판단에 따라

모펀드간의 투자비중을 조절합니다.

※ 챔피언 중단기채 자펀드는 채권시장 및 펀드 운용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개별 모펀드의 투자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비중이 한쪽 모펀드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 시장 상황의 변경 또는 운용 여건의 변경 등에 따라 제시된 투자전략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주)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00% 이하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00% 이하	유진챔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다만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및 '유진챔피언ESG중기채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p>※ 상기의 투자대상 외에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4.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양도성 예금증서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투자대상 :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주)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어음 및 단기사채	60%이상	<p>- 어음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p> <p>- 단기사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0 이상)</p>
②채권 (단기사채)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주식·사채 등의

제외)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기사채 및 법 제4조제7항제1조 규정에 의한 사채권으로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 등에 의한 이자, 그 밖의 과실에 대해서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단, 사채권 및 단기사채, 법 제4조제7항제1조 규정에 의한 사채권은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주식관련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⑤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⑦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차입		상기의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⑨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⑩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의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⑪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⑫양도성 예금증서		
⑬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 ②, ③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④~⑧ 및 투자제한 ②~③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주1) 투자대상 :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주2)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진채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주)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①채권	60%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에 따른 단기사채 등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 외부 평가기관(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결과를 내부 ESG Scoring Model에 적용하여 ESG성과와 재무를 분석하여 선정한 종목
②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③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집합투자증권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주식관련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⑤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⑦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차입		상기의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⑨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⑩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의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⑪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⑫양도성 예금증서	-
⑬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대상 ①, ②, ③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②,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 시행령 제81조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④,⑥,⑦,⑧ 및 투자제한 ②~③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 주1) 투자대상 : 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 주2)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할 수 있습니다.
- 주3)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4)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유진채피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p>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산정</p>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③ 파생상품 거래</p>	<p>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④ 집합투자증권에 투자</p>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p> <p>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p>	

	<p>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⑤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취득	<p>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을 취득하는 행위</p>	
⑥후순위채권에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사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⑦금전의 차입	<p>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법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2) 법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p> <p>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의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p>	
⑨금전의 대여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p>	
⑩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p>	
⑪투자한도 초과	<p>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 유진채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 해관계인과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산정</p> <p>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③ 파생상품 거래	<p>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④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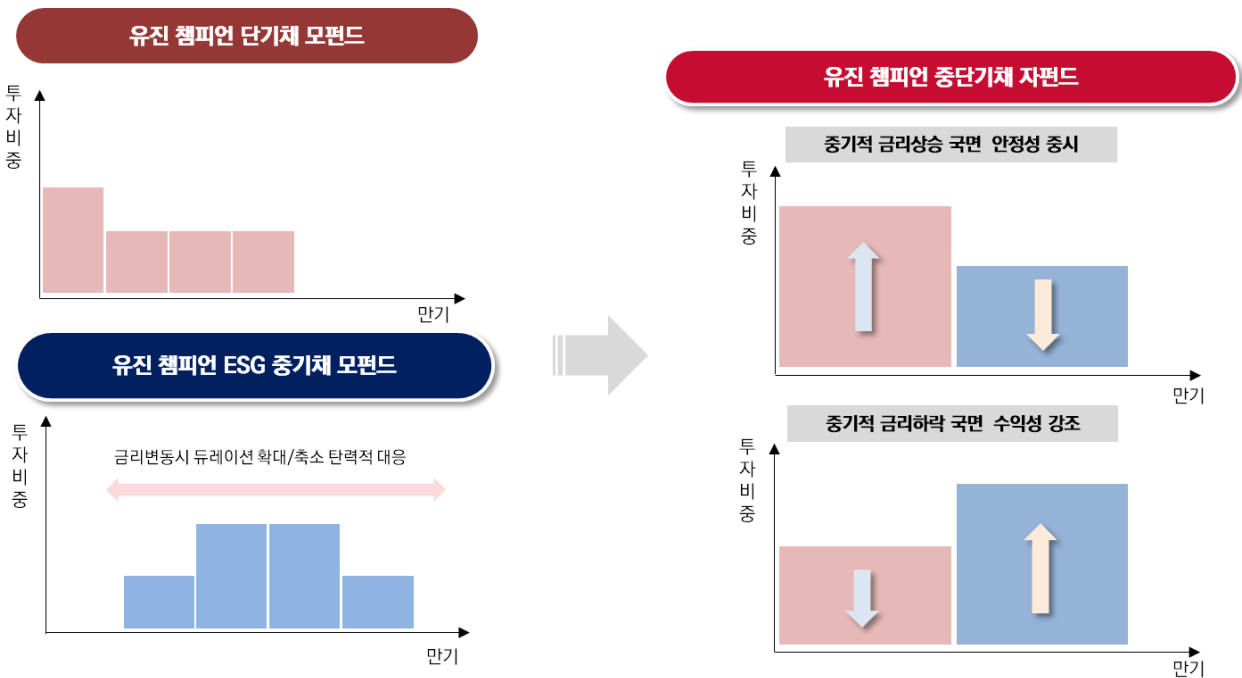
	<p>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⑤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취득</p>	<p>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을 취득하는 행위</p>	
<p>⑥후순위채권에 투자</p>	<p>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사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⑦금전의 차입</p>	<p>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법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2) 법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p> <p>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의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p>	
<p>⑨금전의 대여</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p>	

⑩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계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챔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과 단기사채 및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금리국면 판단에 따라 모펀드간의 투자비중을 조절합니다.



※ 챔피언 중단기채 자펀드는 채권시장 및 펀드 운용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개별 모펀드의 투자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비중이 한쪽 모펀드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 시장 상황의 변경 또는 운용 여건의 변경 등에 따라 제시된 투자전략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B120지수 100%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국채, 특수채, 통안채, 은행채, 기타금융채, 회사채 등을 포함하는 KOB120 지수를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의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기준일 2024년 2월 5일, 단위 : %)

기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수익률	0.3415	2.1953	3.6989	6.2763	9.9336

- KOB120 지수는 잔존 만기 3년 이하의 투자 가능한 채권 120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평균 듀레이션을 1년 내외로 유지합니다. 본 지수는 KIS 채권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 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변경 등록을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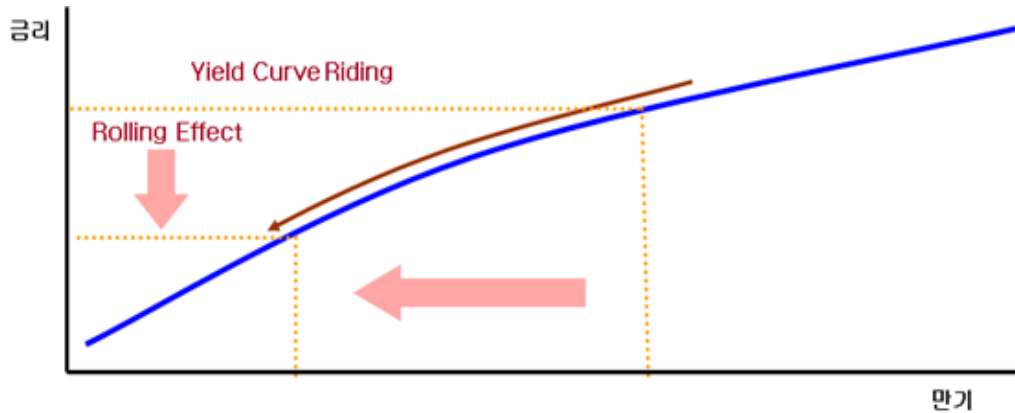
1) 기본 투자전략

- ① 금리변동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Ladder형 포트폴리오로 구성
 - 만기도래분 재투자
 - 금리 상승 시 만기 도래한 낮은 금리 자산을 높은 금리 자산으로 Rebalancing
- ② 비교지수: MK머니마켓지수 100%

2) 수익률곡선타기 전략

우상향하는 수익률 Term Structure 활용

- 채권 또는 기업어음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수익률 곡선에 따라 금리가 하락. 그로 인해 채권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활용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 (단, 시장상황에 따라 우상향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초과수익 전략

- 신탁수익증권, 파생결합사채 등을 편입하여 +α 수익 추구

- 유진챔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ESG 투자전략

ESG 투자란 전통적 투자의 틀인 재무분석과 더불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사회적 책임투자로, 당사 크레딧 유니버스에 외부 ESG평가기관 및 내부 ESG Scoring Model을 활용하여 유진 ESG 통합 유니버스를 구축, 이 중 우수한 ESG채권을 선별하여 지속가능 한 장기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 투자대상자산의 선정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ESG요소

외부 ESG평가기관은 다양한 ESG요소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분류까지의 평가요소는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유진자산운용은 아래 ESG요소 중 대분류단에서 취합된 점수를 내부 모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환경	I. 리더십과 거버넌스	가. 거버넌스 / 나. 전략 및 목표 / 다. 환경경영 내재화
	II. 위험관리	가. 위험관리
	III. 운영 및 성과	가. 기후변화 / 나. 자원순환 / 다. 물, 토양, 생물다양성 / 라. 오염물질, 화학물질 / 마. 친환경 공급망 / 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IV. 이해관계자 소통	가. 이해관계자 대응 / 나. 환경정보 공개

사회	대분류	중분류
	I. 리더십과 거버넌스	가. 전략과 방침
	II. 노동관행	가. 공정하고 차별없는 고용 / 나.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다.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 라. 근로자 역량 개발 및 지원
	III. 직장 내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 거버넌스 / 나. 안전보건 위험관리
	IV. 인권	가. 인권경영 거버넌스 / 나. 인권 위험 관리
	V. 공정운영 관행	가. 공정운영 거버넌스 / 나. 공정운영 위험관리 다. 동반성장 기반 확립 / 라. 공급망 위험 관리
	VI. 지속가능한 소비	가. 소비자 권익보호 거버넌스 / 나. 소비자 권익침해 위험관리 / 다. 소비자와의 소통 / 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피해보상 / 마. 지속가능한 소비 진작
	VII.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 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 다. 정보보호 투자 / 라. 정보주체 권리보장
	VIII.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가. 지역사회 참여 거버넌스 / 나. 지역사회 위험관리 / 다. 지역사회 참여 성과관리
	IX. 이해관계자 소통	가. 사회책임경영 정보공개

지배구조 (일반 상장사)	대분류	중분류
	I. 이사회리더십	가. 이사회 독립성 / 나. 이사회 다양성 및 전문성 / 다. 이사회 운영 라. 이사회 내 이사회 -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마. 이사보 수
	II. 주주권보호	가. 주주의 권리 / 나. 주주환원 / 다. 소유구조
	III. 감사	가. 감사기구구성 / 나. 감사기구운영 / 다. 회계투명성 / 라.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IV. 이해관계자 소통	가. 정보 공개

지배구조 (금융사)	대분류	중분류
	I. 이사회	가. 이사회 역할과 책임 / 나. 이사의 역할과 책임 / 다. 이사회 구성 라. 이사회 운영 / 마. 임원(최고경영자 제외)의 선임
	II. 주주권보호	가. 주주의 권리 / 나. 주주총회 / 다. 소유구조 / 라. 계열회사와의 거래
	III. 최고경영자	-
	IV. 보수	가. 보수위원회 / 나. 보수체계
	V. 위험관리	가. 위험관리위원회 / 나. 위험관리
	VI.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가. 감사기구 구성 / 나. 감사기구 운영 / 다. 내부통제
	VII. 이해관계자 소통	가. 공시일반 / 나. 연차보고서 공시 / 다. 홈페이지 정보공개

※ 출처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방법론

주) ESG요소는 외부 ESG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ESG 투자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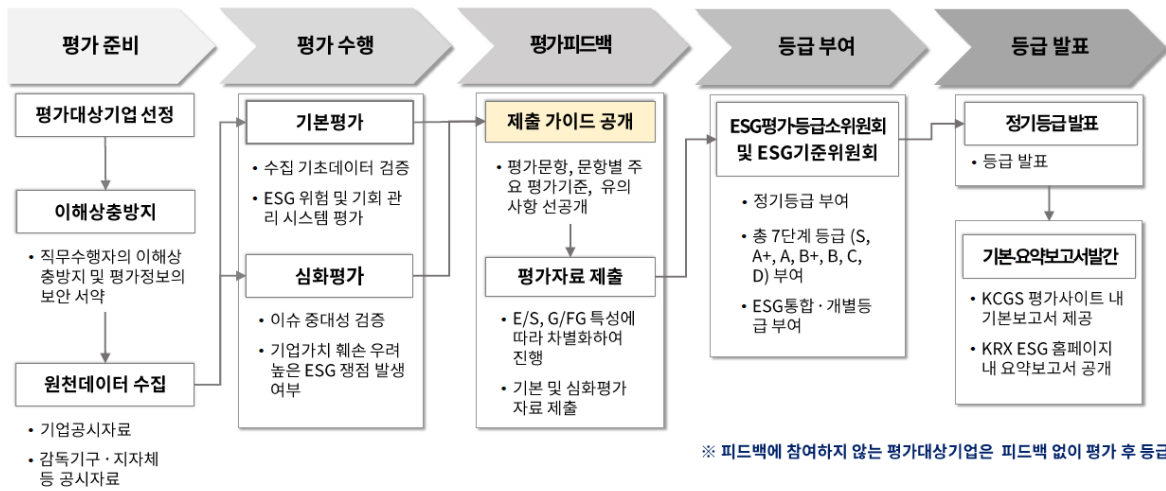
① 내부 Credit Scoring System을 통해 당사 유진 크레딧 유니버스 구성

- 채무상환 여력이 우수한 신용등급 A- 이상 기업들 대상
- 자체 Credit Scoring Model을 활용하여 기업 평가 및 편출입 결정
-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와치리스트(watch list)를 적용하여 관리

② 당사 유진 크레딧 유니버스 중 외부 ESG평가기관을 통해 ESG 등급 채권 목록화

- 한국ESG기준원에서 제공하는 ESG 통합 등급 B 이상인 기업,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B 이상의 기업, ESG 채권 (ESG 채권으로 통용되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채권은 발행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을 지칭)을 추가 편입하여 ESG 등급을 목록화함

▶ 외부 ESG평가기관 : ESG요소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 ESG 등급 체계

S (탁월)	탁월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타 기업과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모범이 되는 상태
A+ (매우 우수)	매우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
A (우수)	비교적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제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
B+ (양호)	양호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
B (보통)	다소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체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
C (취약)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
D (매우 취약)	매우 취약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제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

※ 출처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방법론

③ 당사 ESG 투자 전담조직의 ESG Scoring Model을 통해 내부 ESG 등급 부여

- 한국ESG기준원에서 제공하는 ESG 점수를 활용하여 모델링

▶ 내부 ESG Scoring Model : ESG요소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 기업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분석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과거 및 현재의 ESG 수치 및 전년도 대비 개선도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함.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섹터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상/중/하 3개의 내부 등급 체계로 분류
- Negative Screening : ESG 측면에서의 기업 평판 및 리스크 요인, 논쟁적 이슈 고려하여 편출 결정, 비인도적 행위, 평등에 반하는 행위 등과 같이 ESG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 배제
- Positive Screening : 중장기적 ESG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및 종목 파악, 등급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ESG 활동을 선도하거나 지속가능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 편입

▶ ESG 등급 체계

ESG Scoring 점수	등급	투자전략
80점 이상	상 (1등급)	50% 이상 투자
50점 이상	중 (2등급)	
50점 미만	하 (3등급)	15% 미만 선별적 투자

▶ 내부 ESG 담당 조직

- 집합투자업자는 2021년 투자대상기업의 ESG 평가 및 리서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2인) 설치 후 운영중
- ESG 담당 조직은 자체 구축한 ESG Scoring Model을 통한 투자대상 자산의 내부등급 산출 및 상시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ESG 이슈 파악의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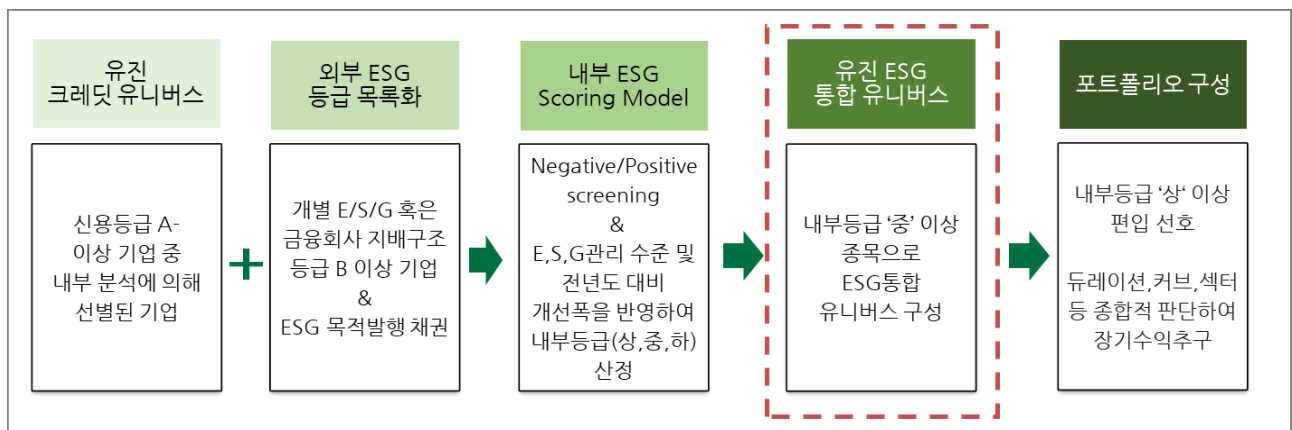
④ 유진 ESG 통합 유니버스 구축

- 내부 ESG Scoring Model을 통해 ESG등급 '중(2등급)' 이상 기업들로 선별
- 내부 ESG 등급 '하(3등급)' 중 잠재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선별적 투자

⑤ 포트폴리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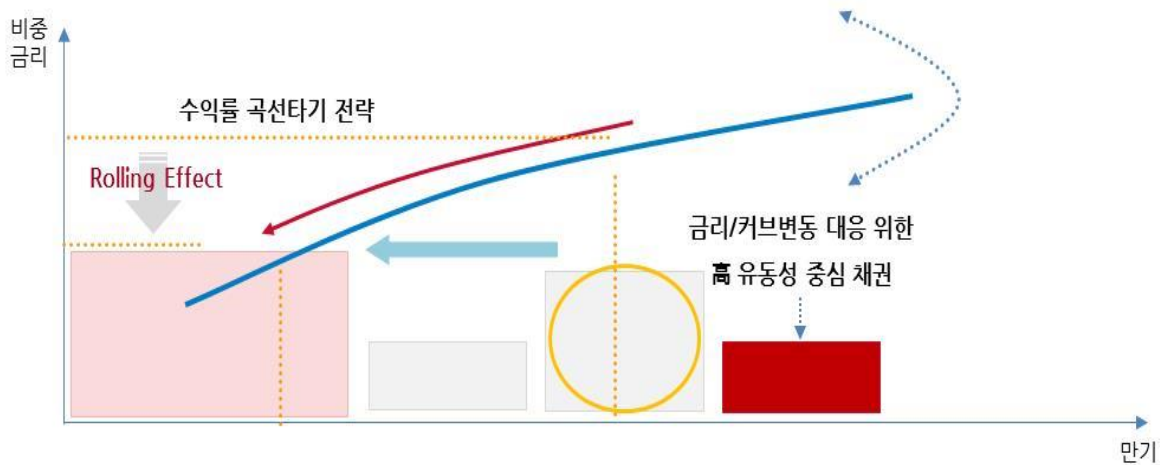
- 유진 ESG 통합 유니버스 채권 중 50% 이상 투자 추구 및 '상(1등급)' 이상 편입 선호
- 국내외 ESG 관련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및 종목 파악하여 편입 우선 순위 반영
- Rising Star 종목 탐색 및 듀레이션, 커브, 섹터 결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M대비 초과 수익 추구

[ESG 투자 프로세스]



(3) 기본 투자전략

- Carry & 상대가치 매력중심의 채권투자 : 신용등급 A- 이상 우량 크레딧의 높은 이자수익과 수익률곡선타기 (장단기금리차) 효과에 따른 자본이익 획득
- 펀드 듀레이션 1.5년 내외
- 금리변동에 따라 펀드 듀레이션 0.5~3년 탄력 대응
- 유동성 높은 국공채/특수채/은행채 일정비중 활용



(4) 초과수익 추구 전략

- Top-down 접근 : 일드커브 전략
- Bottom-up 접근 : Micro-크레딧 전략
 - 신용등급 상승 기대 → 저평가, Rising Star 발굴
 - 지배구조변경, 합병분할 → Event-driven 투자
 - Break-Even 분석 → Carry + 전략
- CP, 단기사채, 집합투자증권 등(40%이하) 투자

나. 위험관리 : 신용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란 거래상대방이 상환의무 또는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 이행 전에 계약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적 손실가능성을 의미하며,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가능 유니버스 및 종목별 투자한도 관리
- 섹터별/등급별 투자한도(Exposure) 관리
- EDF(부도예측확률)를 통해 예상부도확률 체크
- 신용등급 변화에 따른 투자유의 종목 관리

※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챔피언ESG중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과 단기사채 및 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유진챔피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상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금리국면 판단에 따라 모펀드간의 투자비중을 조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채산을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신탁수익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어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회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 손실위험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무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채무증권은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위험과 쿠폰의 재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 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 만기를 가진 채무증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무증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증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증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이 투자신탁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금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신탁의 적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비용의 증가, 환매연기 등으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자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의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대상종목의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 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SG 채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ESG관련 평가등급이 양호한 기업의 채권 및 어음과 ESG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다만, ESG관련 채권 및 어음의 부재 또는 유통물량이 적을 경우 투자목적 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G 채권 및 어음은 발행 특성상 특정산업에 대 한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산업별 위험이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분산투자가 잘 이루어진 투자신탁에 비하여 클 수 있습니다.
채권시장(또는 동종 일 반펀드)과의 괴리 위험	투자전략의 특성(비재무적 요소 평가, 수탁자책임 제고 전략 등)상 전체 채권시장(또는 동종의 유사한 일반펀드)의 성과와 다를 수 있으며, 가격변동·신용위험 등이 상대적으 로 클 수 있습니다.
ESG 평가등급 변경 위험	투자운용 중 투자대상 기업에 업무상 재해 발생, 경영진의 일탈행위 등 부정적 이슈의 발생으로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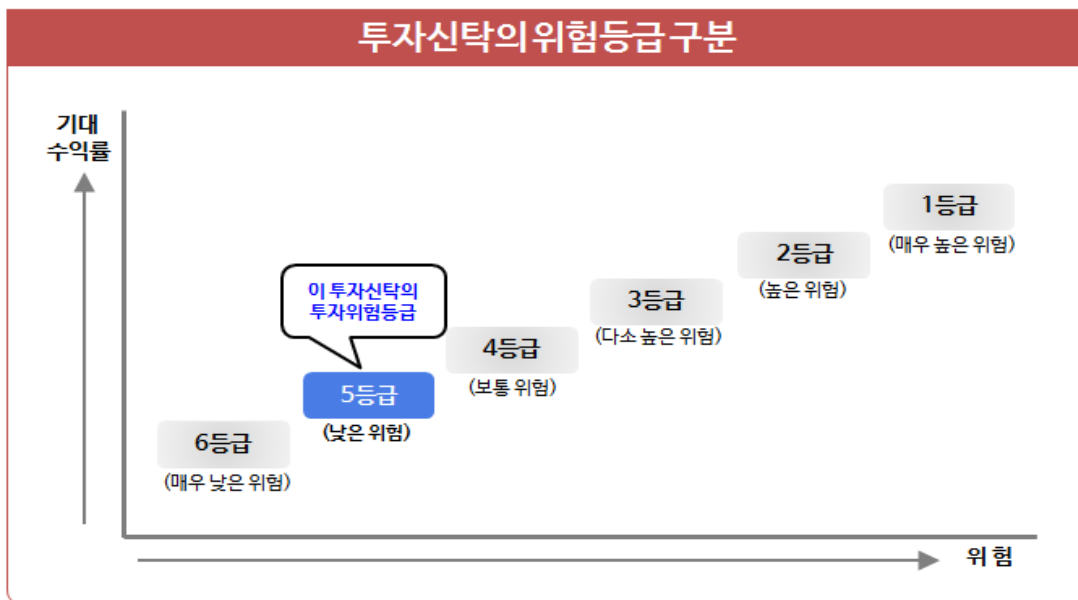
다.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 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 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 위험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 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 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 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 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 **5등급(낮은 위험)**



유진자산운용(주)은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 "유진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과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0.9468%** 수준이므로 유진자산운용(주)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1.09.08	5등급	6등급	-설정기간 3년 경과로 인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한 위험등급이 아닌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 변경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 0.3844%)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22.09.01	6등급	5등급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 0.6783%) 변경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유진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1) 투자대상자산 고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부동산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레버리지(차입)을 일으키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형 펀드(주식형 및 주식파생형) ③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레버리지(차입)을 일으키지 않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⑤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장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귀책사유 이외의 협약 해지 시 원금회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한정)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미만의 펀드 또는 특별한 상황의 펀드에 적용되는 유진자산 운용(주)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의 펀드 :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펀드로서 '변동성 반영 위험등급 기준'에 따른 위험도가 낮게 측정되더라도 투자자에게 그 위험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펀드이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 구조의 펀드 등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Commodity), 리츠, 지분(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투기등급채권 등*, 무담보대출 및 대출채권, 파생상품 이러한 고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 투기등급채권 등: 투기등급채권(BB+이하), 투기등급CP(B+이하), 자산유동화관련 채권 (BBB+ 이하), 후순위채권, 주권관련사채권,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 및 이러한 투기등급채권 등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

3.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이상), CP(A3-등급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투자원금에 대해 정부의 신용보강이 있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 이러한 중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이상), CP(A2-등급이상), 현금성자산 등 이러한 저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1등급씩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의 경우 국제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하여 분류합니다.

7.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9. 파생상품 또는 증권의 차입 등을 통하여 위험노출 수준을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1배수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레버리지형 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0.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의 종류 및 담보비율, 보증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위험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1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 등)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변동성 반영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펀드에 적용되는 유전자산운용(주)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사용합니다.

※ 표준편차 계산수식 :

$$\sigma = \sqrt{\frac{52}{156-1} \sum_{t=0}^{155} (r_t - \bar{r})^2} \quad , \quad \bar{r} = \frac{1}{156} \sum_{t=0}^{155} r_t$$

- * r_t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 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3. 모자형구조의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펀드로 '변동성 반영 위험등급 기준'에 따른 위험도가 낮게 측정되더라도 투자자에게 그 위험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는 펀드이거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 구조의 펀드는 이를 감안하여 투자대상자산 고려 위험등급 기준으로 부여한 최초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변경이 운용전략의 변경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간접펀드가 신규펀드인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6.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7.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펀드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운용전략이 동일한 경우, 사모펀드의 과거 수익률 변동성 측정값으로 공모펀드의 위험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9.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2)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이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 가입 전용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2)	최초 납입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 -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e)	판매회사의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 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가입을 요청하거나 직접 선택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가입을 요청하거나 직접 선택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 수익증권

주1) 다른 종류간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주2)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판매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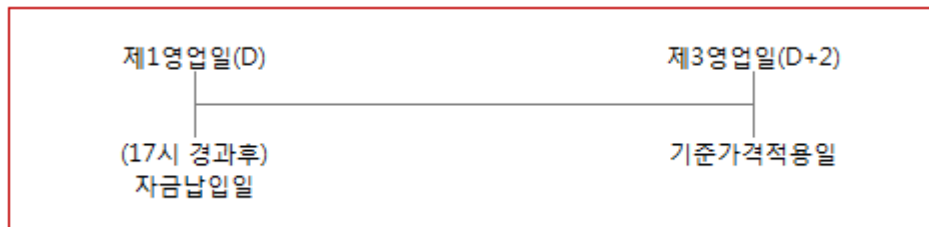
종류별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10% 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2)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30% 이내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5% 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07% 이내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후취판매수수료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4)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7시(오후5시) 경과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5)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 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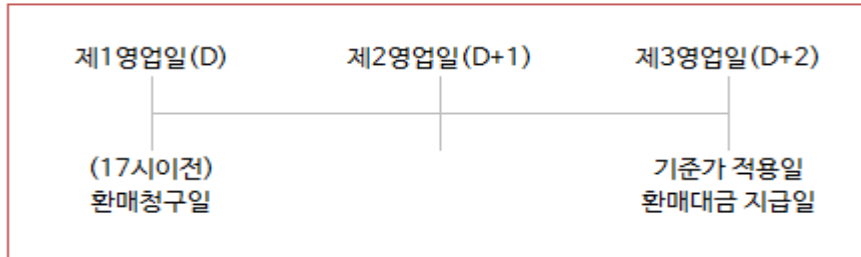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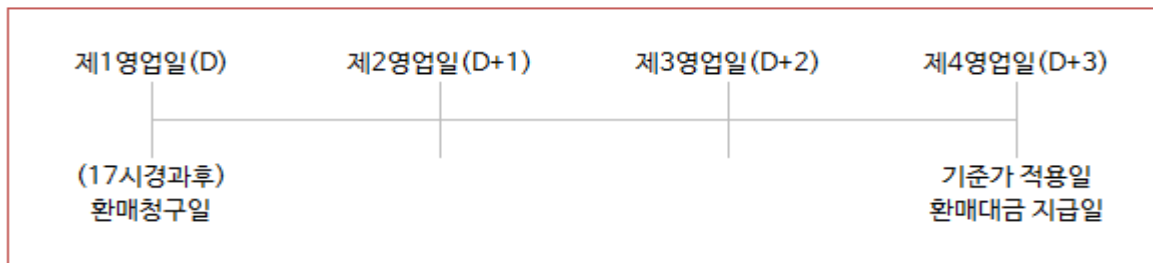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3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17시(오후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4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5)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6)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 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7)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수익증권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9) 수익증권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수익증권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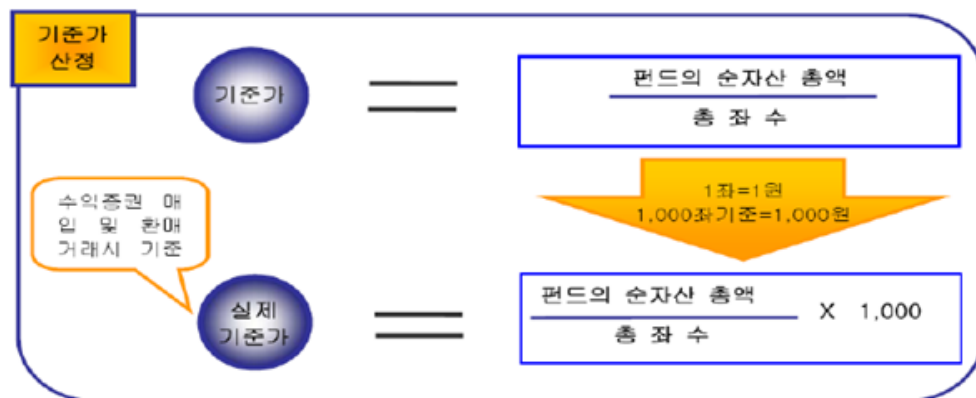
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습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각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및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주)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10%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2)	납입금액의 0.30%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05%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2)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없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A-G)	납입금액의 0.07%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O)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1000	0.2000	0.0100	0.0100	0.0025	0.3225	0.2500	0.3316	0.027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1000	0.1000	0.0100	0.0100	0.0022	0.2222	0.2200	0.2314	0.03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0.1000	0.2900	0.0100	0.0100	0.0024	0.4124	0.3500	0.4215	0.02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1000	0.1450	0.0100	0.0100	0.0022	0.2672	0.2400	0.2764	0.03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0.1000	0.0150	0.0100	0.0100	0.0024	0.1374	-	0.1466	0.02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0.1000	0.0900	0.0100	0.0100	0.0000	0.2100	-	0.21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2)	0.1000	0.0500	0.0100	0.0100	0.0000	0.1700	-	0.17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0.1000	0.0000	0.0100	0.0100	0.0000	0.1200	-	0.1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0.1000	0.2300	0.0100	0.0100	0.0024	0.3524	-	0.3616	0.02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0.1000	0.1100	0.0100	0.0100	0.0022	0.2322	-	0.2414	0.03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R)	0.1000	0.2200	0.0100	0.0100	0.0024	0.3424	-	0.3516	0.02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Re)	0.1000	0.1050	0.0100	0.0100	0.0023	0.2273	-	0.2365	0.0315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형(S)	0.1000	0.0800	0.0100	0.0100	-0.0004	0.1996	-	0.2090	0.03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0.1000	0.0600	0.0100	0.0100	0.0016	0.1816	-	0.1908	0.031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0.1000	0.1400	0.0100	0.0100	0.0000	0.2600	-	0.26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0.1000	0.2000	0.0100	0.0100	0.0000	0.3200	-	0.3200	0.0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2)	0.1000	0.0500	0.0100	0.0100	0.0024	0.1724	0.2600	0.1809	0.022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형(S-R)	0.1000	0.0400	0.0100	0.0100	0.0000	0.1600	-	0.1600	0.0000
수수료미징구-디플트옵션- 퇴직연금(O)	0.1000	0.1020	0.0100	0.0100	-	0.2220	-	0.2220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 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4,956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59,496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외부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예시)]

구분	투자기간 (단위:천원)	투자기간 (단위:천원)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3	78	114	191	419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4	80	117	196	43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8	66	85	127	24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8	68	88	132	26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 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	52	77	130	28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9	54	80	135	3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	86	133	232	5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3	88	136	237	5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	56	86	151	3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8	58	89	156	3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	29	44	78	17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	31	47	83	1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형(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	44	68	118	26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	44	68	118	2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형(C-I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	36	55	96	21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	36	55	96	2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	25	39	68	15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	25	39	68	1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6	74	113	198	44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7	76	116	203	4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	49	75	131	2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5	51	78	136	3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R)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5	72	110	193	4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6	74	113	198	4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R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	48	73	128	29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4	50	76	133	30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	42	64	113	2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	44	67	118	2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	38	59	102	2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	40	62	108	244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4	61	91	153	3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4	61	91	153	3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형(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	67	103	180	4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33	67	103	180	406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형(S-R)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	34	52	90	20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	34	52	90	205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 -퇴직연금(O)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	47	72	126	2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	47	72	126	28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Class S 수익증권의 경우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를 등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예시에는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이 투자신탁은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 ① 기대효과 : 투자신탁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지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② 유의사항 :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총 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②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

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다만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p>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p>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세무전문가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기(2022.08.22 - 2023.08.21)	하나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21.08.22 - 2022.08.21)	하나회계법인	적정
제 3기(2020.08.22 - 2021.08.21)	하나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통합 재무상태표			
항 목	제 5 기	제 4기	제 3기
	(2023.08.21)	(2022.08.21)	(2021.08.21)
운용자산	173,972,931,356	264,175,449,344	316,904,691,152
증권	173,972,931,356	264,175,449,344	316,904,691,15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098,010,993	0	4,644,808,616
자산총계	180,070,942,349	264,175,449,344	321,549,499,76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9,087,850	143,934,989	213,392,967
부채총계	99,087,850	143,934,989	213,392,967
원본	168,802,502,245	259,756,928,376	310,731,199,178
수익조정금	485,916,051	1,078,700,329	107,284,332
이익잉여금	10,683,436,203	3,195,885,650	10,497,623,291
자본총계	179,971,854,499	264,031,514,355	321,336,106,801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	제 4기	제 3기
	(2022.08.22 - 2023.08.21)	(2021.08.22 - 2022.08.21)	(2020.08.22 - 2021.08.21)
운용수익	10,159,547,775	-1,087,999,551	4,862,888,053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0,159,547,775	-1,087,999,551	4,862,888,053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443,017,804	622,930,533	1,057,048,325
관련회사 보수	443,017,804	622,930,533	1,057,048,32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5,536,195	32,880,066	45,626,829
당기순이익	9,690,993,776	-1,743,810,150	3,760,212,899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2.08.22 - 2023.08.21)			전기(2021.08.22 - 2022.08.21)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	-	-
합계	-	-	-	-	-	-

주)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0-1-1조(재무정보)에 의거하여 대차대조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0-1-1조(재무정보)에 의거하여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운용펀드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2,628	2,632	1,121	1,157	2,041	2,089	1,707	1,801
2021.08.22 - 2022.08.21	3,125	3,153	955	960	1,452	1,460	2,628	2,642
2020.08.22 - 2021.08.21	3,341	3,392	3,788	3,872	4,004	4,097	3,125	3,215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681,034,818좌/3,738,780,834원

주2) 2021.08.22 - 2022.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8,752,965좌/118,927,969원

주3)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276,524,859좌/2,296,921,667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252	256	43	44	263	272	31	33
2021.08.22 - 2022.08.21	416	426	108	110	272	277	252	256
2020.08.22 - 2021.08.21	448	459	670	690	702	724	416	431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4,163,891좌/77,116,050원

주2)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08,535,706좌/520,427,353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24	25	52	55	32	33	45	48
2021.08.22 - 2022.08.21	55	57	7	7	38	39	24	25
2020.08.22 - 2021.08.21	66	68	137	142	148	154	55	57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9,177,415좌/133,947,626원

주2)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5,377,799좌/77,187,602원

수수료후취-오프라인형(C)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170	173	142	146	206	212	106	113
2021.08.22 - 2022.08.21	641	657	63	65	534	545	170	173
2020.08.22 - 2021.08.21	1,158	1,187	1,256	1,294	1,774	1,829	641	663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15,512,144좌/325,841,222원

주2)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40,509,745좌/554,311,834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62	63	233	246	168	177	127	136
2021.08.22 - 2022.08.21	230	236	105	107	272	278	62	64
2020.08.22 - 2021.08.21	254	262	835	864	860	890	230	238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00,774,726좌/313,417,479원

주2) 2021.08.22 - 2022.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738,075좌/9,916,245원

주3)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1,005,501좌/257,603,413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1,465	1,488	403	421	1,168	1,213	700	748
2021.08.22 - 2022.08.21	973	996	492	500	0	0	1,465	1,491
2020.08.22 - 2021.08.21	586	598	388	400	0	0	973	1,007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5,868,357좌/97,961,941원

주2) 2021.08.22 - 2022.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5,780,273좌/107,460,008원

주3)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329,365좌/2,383,184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8.22 - 2021.08.21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216	219	11	11	27	28	200	213
2021.08.22 - 2022.08.21	235	239	16	16	34	35	216	219
2020.08.22 - 2021.08.21	203	207	82	84	50	51	235	242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58,718,763좌/874,045,390원

주2)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9,404,539좌/264,243,944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26	26	43	45	16	17	52	55
2021.08.22 - 2022.08.21	51	52	22	22	48	48	26	26
2020.08.22 - 2021.08.21	29	30	49	50	27	27	51	53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91,420,216좌/196,305,711원

주2) 2021.08.22 - 2022.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32,660좌/235,447원

주3)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8,408,701좌/69,645,509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303	307	30	31	76	77	257	273
2021.08.22 - 2022.08.21	353	359	34	35	84	85	303	307

2020.08.22 - 2021.08.21	464	472	141	144	252	259	353	363
----------------------------	-----	-----	-----	-----	-----	-----	-----	-----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85,707,977좌/1,106,329,541원

주2)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42,310,255좌/348,805,566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e)[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75	77	132	139	43	44	165	176
2021.08.22 - 2022.08.21	108	110	34	35	67	68	75	77
2020.08.22 - 2021.08.21	88	90	114	117	94	97	108	112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80,342,589좌/597,190,974원

주2) 2021.08.22 - 2022.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34,036좌/1,149,645원

주3)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5,200,374좌/148,084,704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0	0	2	2	1	2	0	0
2021.08.22 - 2022.08.21	0	0	0	0	1	1	0	0
2020.08.22 - 2021.08.21	1	1	2	2	3	3	0	0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35,562좌/565,046원

주2) 2021.08.22 - 2022.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0,348좌/31,022원

주3)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85,452좌/397,409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0	0	6	6	2	2	4	5
2021.08.22 - 2022.08.21	1	1	0	0	0	0	0	0
2020.08.22 - 2021.08.21	1	1	2	2	3	3	1	1

주1) 2022.08.22 - 2023.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5,567,347좌/16,059,854원

주2) 2021.08.22 - 2022.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3,384좌/135,602원

주3)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43,280좌/455,35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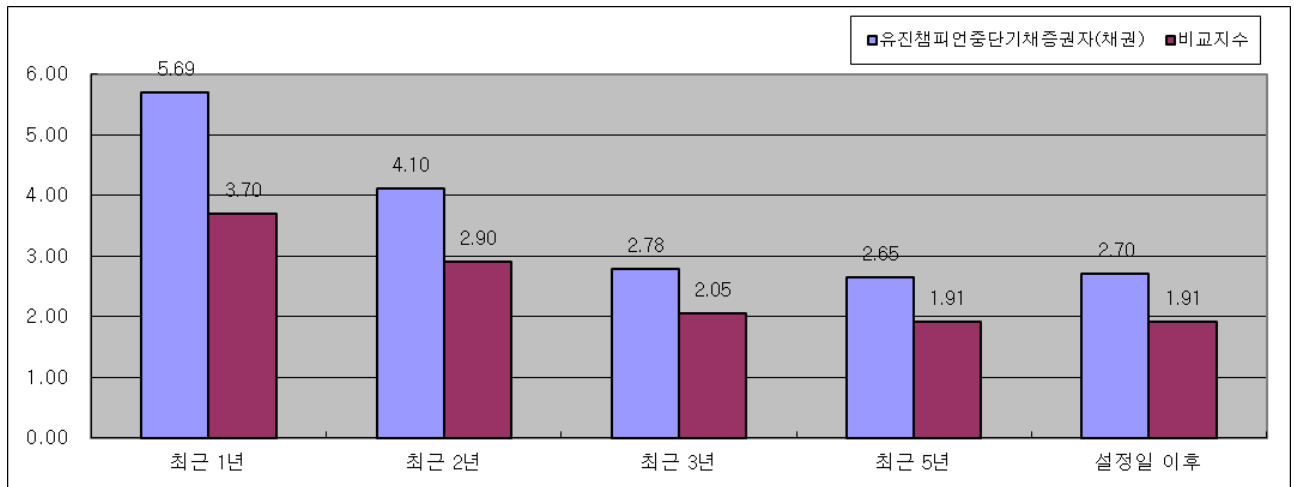
수수료선취-오프라인-오프라인형(A2)[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8.22 - 2023.08.21	4	4	0	0	4	4	0	0
2021.08.22 - 2022.08.21	45	45	1	1	41	42	4	4
2020.08.22 - 2021.08.21	36	37	10	10	1	1	45	46

주) 2020.08.22 - 2021.08.2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2,758,545좌/53,375,798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2.06 ~ 24.02.05	22.02.06 ~ 24.02.05	21.02.06 ~ 24.02.05	19.02.06 ~ 24.02.05	18.08.22 ~ 24.02.05
투자신탁(운용)	5.69	4.10	2.78	2.65	2.70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1
수익률 변동성	0.71	1.13	1.02	0.82	0.79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5.35	3.76	2.45	2.32	2.37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5.45	3.87	2.56	2.42	2.47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5.25	3.67	2.36	2.23	2.28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5.41	3.82	2.51	2.38	2.42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5.54	3.96	2.64	2.51	2.56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형(C-W)	1.70	0.85	0.56	0.31	0.33
비교지수	1.10	0.55	0.36	0.20	0.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5.32	3.73	2.42	2.29	2.34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5.44	3.86	2.55	2.41	2.47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	5.33	3.74	2.43	2.30	2.37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e)	5.45	3.86	2.55	2.42	2.49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5.48	3.90	2.58	2.45	2.51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5.50	3.91	2.60	2.47	2.53
비교지수	3.70	2.90	2.05	1.91	1.93

주1) 비교지수 : KOB120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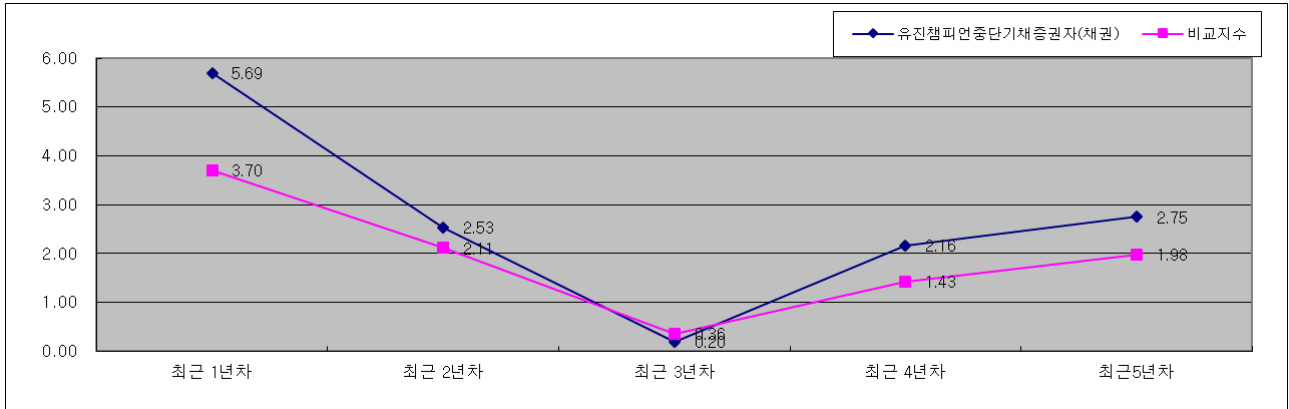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로 운용펀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5)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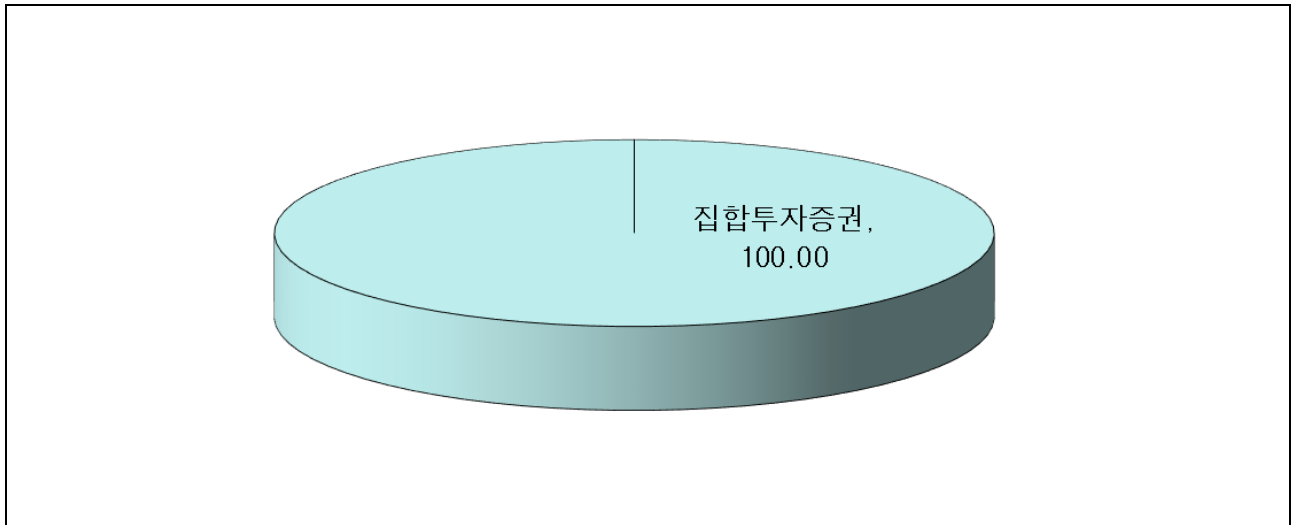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4년	최근 5년
	23.02.06 ~ 24.02.05	22.02.06 ~ 23.02.05	21.02.06 ~ 22.02.05	20.02.06 ~ 21.02.05	19.02.06 ~ 20.02.05
투자신탁(운용)	5.69	2.53	0.20	2.16	2.75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5.35	2.20	-0.12	1.84	2.42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5.45	2.31	-0.02	1.94	2.52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5.25	2.11	-0.21	1.75	2.33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5.41	2.26	-0.06	1.89	2.47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5.54	2.39	0.06	2.02	2.61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1.70	0.00	0.00	-2.68	2.62
비교지수	1.10	0.00	0.00	-2.01	1.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5.32	2.17	-0.15	1.81	2.39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5.44	2.30	-0.03	1.93	2.51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	5.33	2.18	-0.14	1.82	2.40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e)	5.45	2.30	-0.02	1.93	2.51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5.48	2.33	0.00	1.96	2.54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	5.50	2.35	0.02	1.98	2.56

(S-P)					
비교지수	3.70	2.11	0.36	1.43	1.98

- 주1) 비교지수 : KOB1120지수 100%
-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7)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투자신탁(운용)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3.11.2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586	0	0	0	0	0	0	0	1,586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합계	0	0	0	1,586	0	0	0	0	0	0	0	1,586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주) 자산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라. 투자전략의 이행 현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 수집하여 내부 ESG 등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외부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등급 반영

외부평가기관(한국ESG기준원)은 연 1회 정기평정 외에 연 3회의 등급조정을 실시하는 바, 당사에서는 해당 정보를 검토하여 내부 등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이슈와 관련된 미디어 내용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 대량 수집 및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회성 평가가 아닌 실시간 변화하는 각종 이슈를 적시에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전략 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tep1] 공공기관, 미디어 보도 자료 등의 상시 검토를 통해 기업 가치 및 크레딧(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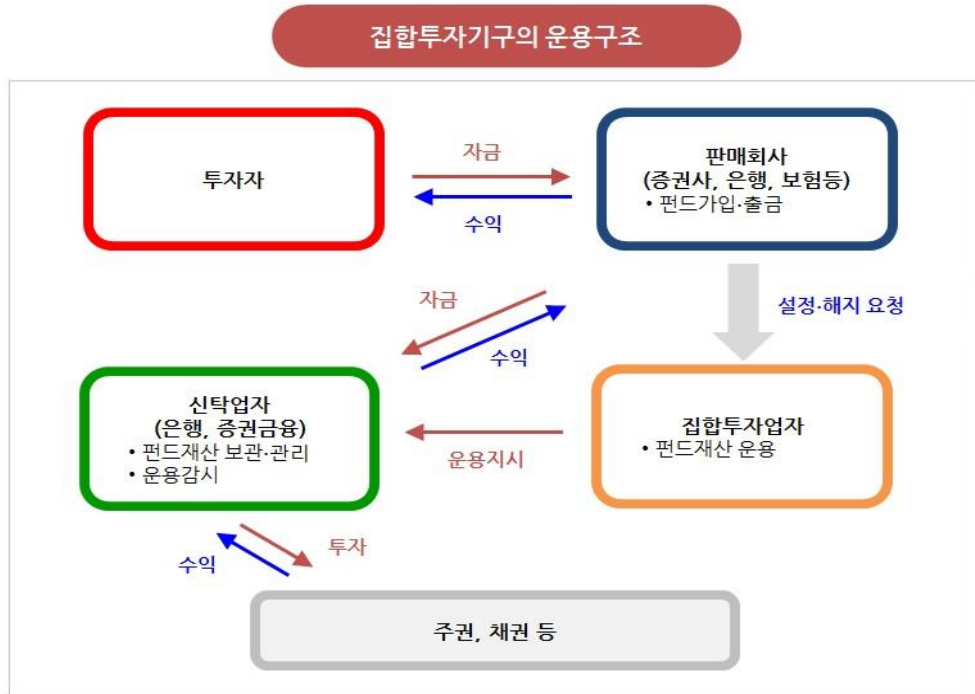
- 매주 1~2만여건의 뉴스 자료 빅데이터 분석
- 기업 가치에 대한 영향 분석 (Positive / Negative Screening)

[Step2] ESG 이슈 발생 시, 펀드 내 보유현황 및 관련 영향 분석

[Step3] 담당 운용역은 펀드의 운용전략을 고려하여 종목 매매 또는 보유 등 의사결정

[Step4] ESG 리서치팀은 ESG 이슈의 중대성, 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 유니버스 조정 및 관리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유진자산운용㈜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22층
연락처	☎ (02) 2129-3300
인터넷 홈페이지	fund.eugenefn.com
회사연혁	1989.09 우성투자자문 설립 1991.05 한일은행 그룹에서 인수, '한일투자자문'으로 상호변경 1996.09 '한림투자신탁운용'으로 업종 전환 (대림그룹과 합작) 1998.05 '한일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1999.06 세계적인 투자가인 소로스가 경영권을 가진 서울증권 인수 2006.04 '서울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6.12 유진그룹에서 서울증권 인수,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8.01 '유진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자본금	225억원
주요주주현황	유진투자증권 100%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업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FY2022 2022.12.31	FY2021 2021.12.31
요약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51,299	52,415
	Ⅰ. 현금 및 예치금	14,689	13,864
	Ⅱ.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9,903	19,538
	Ⅲ. 매도가능금융자산	-	-
	Ⅲ. 만기보유금융자산	-	-
	Ⅳ. 파생상품자산	-	-
	Ⅴ. 종속기업투자자산	-	-
	Ⅵ. 대출채권	-	-
	Ⅶ. 유형자산	3,919	4,616
	Ⅷ. 기타자산	12,787	10,726
	부채총계	21,513	21,793
	Ⅰ. 차입부채	3,000	-
	Ⅱ. 기타부채	18,513	21,793
	자본총계	29,786	30,622
	Ⅰ. 자본금	22,500	22,500
	Ⅱ. 자본잉여금	2,486	2,486
	Ⅲ. 이익잉여금	4,904	5,753
Ⅳ. 자본조정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4)	(117)	
요약 손익계산서	Ⅰ. 영업수익	19,178	26,159
	Ⅱ. 영업비용	20,146	21,767
	Ⅲ. 영업이익	(968)	4,392
	Ⅳ. 영업외수익	-	430
	Ⅴ. 영업외비용	3	5
	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971)	4,817
	Ⅶ.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22)	1,043

	X. 당기순이익	(849)	(3,774)
--	-----------------	--------------	----------------

라. 운용자산규모 (2024.02.05 기준 / 단위:억원 / 투자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2,718	26,432	817	0	1,850	2,170	0	9,397	8,432	1,075	26,468	79,35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업무위탁]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서비스 제공 수탁업자"라 한다)는 한국ESG기준원입니다.
- ② 서비스 제공 수탁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펀드의 투자대상자산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 업무
- ③ 서비스 제공 수탁업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 수탁업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회 사 명	한국ESG기준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 02-3775-3339 홈페이지 : www.cgs.or.kr
회사연혁등	2002.06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설립 2010.08 (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칭 2022.09 (사)한국ESG기준원 개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1588-9999 / 홈페이지 : www.kbstar.com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 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 (02)2168-0400 / www.shinhanfundpartners.com
회사연혁 등	2000.06 설립 2000.09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2008.05 주식회사 신한은행 자회사 편입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KIS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www.koreabp.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www.fnpricing.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www.bond.co.kr
회사 연혁	2000.05 설립 2000.07 금융감독원 등록	2000.06 설립 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2011.06 설립 2011.09 금융감독원 등록	2000.06 설립 2000.06 금융감독원 등록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7. ESG 평가기관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ESG기준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 02-3775-3339 홈페이지 : www.cgs.or.kr
회사연혁등	2002.06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설립 2010.08 (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개칭 2022.09 한국ESG기준원 개칭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과 관련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와 책임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의 준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의성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투자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 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5) 투자신탁의 합병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③ 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 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④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제4 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⑤ 집합투자업자는 '④'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 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 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 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이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유진자산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fund.eugenefn.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②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 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fund.eugenefn.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

- 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단위:백만원)
성명(상호)	관계			
-	-	-	-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 금액 (단위:백만원)	거래사유
-	-	-	-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①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구분	평가항목	
운용부서	정량평가	세미나/ 탐방 / NDR 등
	정성평가	투자중개업자 업무담당자 역량
		IR미팅, NDR 일정 확보
		NDR 일정 확보 능력
		기업 분석 정보의 적시 제공
		기타 사항
트레이딩부서	매매체결의 정확/신속	
	결제 프로세스 정확성	

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구분	평가항목	
운용부서	시장 및 기관 동향	
	발행 및 수요예측의 유효성	
	세미나지원 및 리서치	
	거래보안유지	
트레이딩부서	매매체결의 정확/신속	
	결제 프로세스 정확성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투자주체	유진자산운용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시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수할 계획

주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2)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3) 의무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회당 회수금액은 의무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의무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주4)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5)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 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부동산 관련증권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